마이데이터와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적용 대상 :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 및 민간 부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 2. 보호범위: 종이문셋에 기록된 개인정보 외에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가 명처리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준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이용 및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5.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공개된 장소에 설피하며 설치 목적을 벗어난 이용 금지
-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 전문기관에 신고
- 7.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 가능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및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 8.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위조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9.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도입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처리 목적 외로 이용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금지

마이데이터 관련 법

마이데이터 기본법처럼 마이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법률은 아직 없다.

하지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2018. 11. 15 의안번호 16636)에서 개인신용정보에 한해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Data)을 허가제로 도입할 것을 명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하여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계획이다. GDPR은 개인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 즉,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한다.

마이데이터 관련 규정

개인데이터의 범위를 개인데이터 보호 관점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논의하며, 세계 경제 포럼(WEF)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데이터에 개인의 활동으로 생산된 데이터, 개인이 포함된 기록데이터, 개인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된 데이터도 포함된다.



 WEF에서 정의한 개인데이터 분류체계 세계경제포함(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개인데이터 분류체계를 산편정보, 자산정보부터 성을 및 관계정보까지 포함하여 체시 					
유업		개인정보 참목			
신원정보	인구통계	나이, 생별, 주소, 작업			
	산원확인	이용, 사용자 이용, 휴대폰변호, 발명, 성격, 장치ID (IP주소, 블루투스ID, SSID, IMEL SIM)			
	관심사항	신고내역,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 선호하는 것			
자산정보	가당 재화	사별자(도메인 이름, 소설계정), 가상물품, 디지텔 기교트, 가상용학			
	긍물정보	소득, 지출, 거래내역, 계좌, 제금정보, 자신, 부채, 보험, 신유용급			
	불리적 재화	부음산, 처럼, 개인소지품, 예술품, 기기			
상활정보	위치	현재위치, 계획된 이래위치, 과거위치			
	사람	궁존하는 사람(현실, 디지털), 상호적용하는 사람			
	07世年	달략정보, 웹서비스 이벤트 정보			
	중건	궁존하는 물건(한성, 디지털), 상호적용하는 물건			
	개인문서	워드, 스프레드 시트, 프로젝트 계획, 프레젠테이션			
2004	公司(0)利	핵, 사진, 너디오, 맛캐스트, 몸약, 오디오북, 개인, 소프트웨어/앱			
	보라우저	클릭, 키누르기, 방문제이지, 조회, 즐겨찾기			
88	물건이언트 앱	±			
	불리적 세계	먹기, 마시기, 운전, 쇼핑, 수면			
	운영세계	-			
	존재	异意丛, 郑道			
	9	문자, 인스턴트 에시지/바람, 전자에일(선부자료, 내용), 상태업데이트			
H뮤니케이션	소설이디어	비디오, 쩟케스트, 사진, 공유(몸약, 참크, 효겨찾기)			
	당학	몸성전화, 보이스메일			
	보험정보	친구내역, 지불내역, 보장범위			
건강정보	개인정보	추적장치, 활동기록, 유전자 모드			
	환자정보	처합전, 진단서, 기기로그, 검사정보			
	시원권	-			
7114708	기관(업) 이사회	-			
전부기록	법집행 기독	2			
	공공기목물	법적 이룹, 생일, 사망, 결혼, 이혼, 소유자산			
DEMAIO	학술기록	사람, 학생도로젝트, 성적, 학위			
6-요트플리오	78	리뷰, 활동, 송진, 지속적 교육			
관계정보	면약처	주소트, 의사소용(甚至 기트, 형시지 기회)			
	소설네트워크	-			
	万州东	2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단계	분야	점검사항
수집단계	수집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 내에 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개발하였는가?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 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하도록 개발하였는가?
	법정대리인 동의 및 고지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 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하도록 개발하였는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제한	정보주체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개발하였는가?
	대체가입수단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체가입 수단 을 제공하도록 개발하였는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였는가?
이용단계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및 3자 제공을 하도록 개발하였 는가?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은 범위를 벗어나 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발하였는가?
	개인정보 최신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하고 변경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는 가?
	접속기록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권한변경에 대해 로그를 남기고 이를 안전하게 백업관리 되도록 개발하였는가?
파기단계	파기 기록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되도록 개발하였는가?
	개인정보 완전 과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완전 파기되도록 개발하였는가?
	개인정보 보관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정보와 분리된 영역에 저장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이 적용되도록 개발하였는가?

우리나라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흐름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핀테크 회사와 금융기관 간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해 공개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공동 오픈 API'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은행권과 금융투자 업계는 각각 코스콤, 금융결제원을 필두로 하여 오픈 API를 구현하였고 거래내역이나 잔액을 조회하는 기초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입출금, 이체, 주식 매도와 매수 같은 여러 기능들을 망라하여 마이데이터로써의 기능을 부분적이지만 수행하였다.

2018년 7월 발표된 마이데이터가 그 다음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정보법 개정 이후 개인신용정보이동권(데이터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읽기 기능에 국한하여 표준화된 오픈 API를 구축할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본인신용 정보관리업을 신설하고 업자가 인가를 받아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와 정보계좌 업무, 투자자문 및 일임, 금융상품 자문 업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쓰기 기능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공동 결제시스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추진의 결과와 데이터 경제 이행에 따라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정보 활용이 중요해졌다.

그러한 수순으로 개인의 권리보장, 개인정보 관리와 활용에 근거한 산업 육성 등을 도 모하고자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신용정보법 개정 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으며 금융분야에선 마이데이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표 3-7〉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화
-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 포함
-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표 3-8〉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표 3-9〉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

-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도 도입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66)등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표 3-11〉 마이데이터 소비자권리 보호 내용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 보호 내용					
(명확한 동의)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허용	※ 소비자보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의 관련 절차 및 양식 확정			
② (정보보호 강화)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금융보안원 수시점검)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항목에 반영			
❸ (과당경쟁 방지)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감독규정 반영), 기존 가입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서비스 안내	※ 과도한 마케팅 금지(3만원)			
④ (보 안 관 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감독규정 반영)				

해외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EU가 2016년 제정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요청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데이터를 제 3 자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

2011년 4월, 모든 산업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던 영국은 2016년에 고객데이터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정보까지 제3자에게 API로 제공하는 오픈뱅킹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사용자는 금융상품의 복잡한 정보를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지 않고도,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편하고 쉽게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fsc.go.kr/no010101/77863?
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 200206_마이데이터-서비스-안내서-내지최종웹용-1.pdf 2520.2KB
-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pdf 2418.2KB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 menukey=6101&fno=10033048&bid=00000146&did=1003270125

보고서에 없는 참고문헌